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
----------	-----

발의연월일 : 2016. 6. 13.

발의자 : 정성호 · 이찬열 · 박범계
임종성 · 최도자 · 김동철
이춘석 · 이원욱 · 최인호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차로의 설치 등) ① 도시철도 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안전표시나 노면표시 등으로 노면전차의 통행구간을 표시한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차로의 설치 및 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p> <p><신 설></p>	<p>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p> <p>-----</p> <p>-----</p> <p>-----.</p> <p>다만,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p>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차로의 설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안전표시나 노면표시 등으로 노면전차의 통행구간을 표시한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차로의 설치 및 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